

2019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

■ 본인부담금 인상안내

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6.08%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.

1)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

(단위:원)

등 급	현 행 수 가(2018년)	2019년 수가(6.08%증가액)
1등급	65,190	69,150 (+3,960)
2등급	60,490	64,170 (+3,680)
3~5등급	55,780	59,170 (+3,390)

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

(단위:원)

구 분		본 인 부 담 금(30일기준)				
		일 반 (20%)		인상 금액	경 감 (12%) 신설 18.8.1	경 감 (8%) 신설 18.8.1
		현행	'19.1.1부터		'19.1.1부터	'19.1.1부터
본인 부담 금	1등급	391,140	414,900	23,760	248,940	165,960
	2등급	362,940	385,020	22,080	231,010	154,000
	3~5등급	334,680	355,020	20,340	213,010	142,000
비 급 여	식재료비 (간식포함)	255,000 1일:1식2,500*3회 = 7,500 1일 간식비500*2회= 1,000			255,000 1일:1식2,500*3회 = 7,500 1일 간식비500*2회= 1,000	255,000 1일:1식2,500*3회 = 7,500 1일 간식비500*2회= 1,000
합 계	1등급	601,140	669,900	68,760	503,940	420,960
	2등급	572,940	640,020	67,080	486,010	409,000
	3~5등급	544,680	610,020	65,340	468,010	397,000

*현행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10%(경감율50%)에서 12%(경감율40%), 8%(경감율60%)로 나누어 변경이 되었습니다.(2018년 8월 1일부로 신설)

*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19.1.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9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 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 됩니다.

*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서서는 어르신 면회 전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※ 본인부담금 : 30일 이용 기준
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변동없음)

* 문의전화 : 032-884-6600

* 주 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배곡산길 17 마추미실버케어